

#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

의안 번호	제 392 호
----------	---------

제출연월일 : 2021. 10.
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## 1. 상정이유

2021년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예산 예비비로 편성되어, 국·시·구비 매칭비율에 따른 구비 예산을 예비비로 확보하여 지급하고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입·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4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### 가. 근거

- 1)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무회계 규칙」 제19조(예비비의 사용)
- 2)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입·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」 제3조(예비비 지출 보고 및 승인)
- 3)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28조의 5

### 나.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

- 1) 지원대상: 코로나19로 입원·격리된 자
- 2) 지원기간: 2020.2.17. ~ 현재
- 3) 지원목적: 입원·격리된 대상자에게 생활지원비를 지원함으로써 생계형 이탈을 막아 바이러스 확산을 예방
- 4) 지원금액

(단위: 원)

구분	1인가구	2인가구	3인가구	4인가구	5인가구이상
금액	474,600	802,000	1,035,000	1,266,900	1,496,700

- 격리기간 14일 미만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며 외국인은 1인가구로 적용

5) 예 산 액: 8,665,000천원

(단위: 천원)

구분	합 계	국비(50%)	시비(33.3%)	구비(16.7%)
예산액	8,665,000	4,450,000	2,963,700	1,251,300

#### 다. 예비비 사용 이유

-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인 생활지원비 대상자도 증가하여 4차 국·시비 변경내시에 따라 구비부담분 600,000천원을 예비비로 편성, 185,000천원 집행

### 3. 추진경과

- 2021년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변경내시 통보(4차): 2021.8.2.
- 예비비 사용 승인 요청: 2021.8.30.
- 예비비 배정(기획예산과): 2021.9.1.